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대학원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2022.12.07 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의 석사, 석박사통합, 박사과정의 운영에 관련하여, 기존 산재해 있는 여러 규정들을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위원회) 대학원위원회는 입시, 장학금 배정, 교과 프로그램 등의 대학원 프로그램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학부장이 추천하여 교수회의에서 인준한다.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부학부장이 맡는다. 학부장은 BK21 사업단장을 대학원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조(Full-time residency요건) 석박통합과정과 박사과정 학생은 입학 후 통산 4개 학기 동안 (휴학기간 제외) Full-time resident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학기 당 9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경우 Full-time residency를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단, 대학원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학기에 대하여는 Full-time residency요건을 면제한다.

제4조 (전공과목 이수요건) ① 경제학부 대학원생은 다음 각 호의 전공필수과목을 입학 후 1년 안에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수과목 이수의 면제는 경제학부 대학원 과정 운영 시행세칙 (이하 세칙)에서 정한다.

1. 석사과정 전공필수과목 : 미시경제학연구1, 거시경제학연구1, 경제통계학연구
2. 석박통합과정, 박사과정 전공필수과목 : 석사과정 3과목, 미시경제학연구2, 거시경제학연구2, 계량경제학연구

②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더 어려울 가능성이 큰 전공선택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과목을 1년 안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다른 과목을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대학원생의 타학과 개설 교과목과 국내외 교류수학을 통한 타교 교과목의 수강내역에 대한 전공학점인정은 아래 각 호에서 명시한 최대 인정학점 이내로 제한하며 인정대상 과목은 세칙에서 정한다.

1. 석사과정: 3학점 이내
2. 박사과정: 9학점 이내
3. 석박통합과정: 15학점 이내

제5조(진행보고서) 석박통합과정과 박사과정학생은 연1회 세칙에서 정하는 소정양식의 박사과정 진행보고서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제출자격시험과 시험) 경제학부 대학원 각 과정의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세칙에서 정하며, 석박통합과정학생은 입학 후 4년 내, 박사과정학생은 입학 후 3년 내(가사휴학기간 포함)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기한 내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석박통합과정생은 탈락자 규정에 의해 석사과정으로 전환되며, 박사과정의 경우 제 11조를 적용하여 퇴출된다.

제7조(대학원생 장학금) ① 대학원생 장학금은 교수의 강의·연구조교로 교수의 연구를 보조하며 수혜받은 장학금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학문후속세대 양성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원생 중 지도교수와 대학원위원회, BK21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BK21장학생, 수업 및 연구조교 등으로 배정한다. 장학금은 장기적으로 대학원생 전원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배정함을 목표로 하며,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 우선배정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업성적 요건은 세칙에서 정한다.

④ 석박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제5조의 진행보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학원생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⑤ 모든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1학기 단위로 지급하며,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이 없는 한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4년, 석박통합과정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각 장학생 세부 운영 지침은 해당 장학금의 규정을 따른다.

⑦ 휴학, 징계처분 또는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제8조(Proposal 요건) 박사학위논문 심사 신청일 전에 논문요지 발표회에서 Proposal을 발표해야 한다. Proposal은 해당 전공분야의 Workshop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roposal의 절차는 세칙에서 정한다.

제9조(학술지 게재 요건) 석박통합과정, 박사과정학생은 박사학위논문 심사 신청일 전에 세칙에서 정하는 학술지 게재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10조(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 ① 대학원 과정 논문지도교수는 경제학부 전임교수, 겸무교수 및 기금교수으로 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의 자세한 절차는 세칙에서 정한다.

제11조(퇴출) 서울대학교 학칙과 상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석박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의 퇴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① 이 내규는 2023년 3월부터 시행한다.
- ② 내규 제3조, 제4조의 3항, 제6조, 제8조, 제9조는 2023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 과정 운영 시행세칙

2022. 12. 07 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경제학부 대학원 운영내규(이하 “내규”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공과목 이수요건(내규 제4조 관련)) ① 학사과정에서 본교 경제학부 개설 대학원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고 경제학부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과정간 교과학점 통산인정제도를 통해 수업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② 박사과정생이 타교의 석사과정 재학 중 수강한 석사과정 전공필수과목으로 석사 전공필수과목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③ 타학과 개설 교과목의 전공학점 인정은 본교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경영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의 대학원 정규 과목에 한하며, 이외 교과목과 교류수학을 통한 타교 교과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대학원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3조(진행보고서(내규 제5조 관련)) 석박통합과정과 박사과정학생은 매년 2월 별첨서식의 진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내규 제6조 관련)) ① 경제학 전공의 논문제출자격시험은 기초공통과목과 전공선택과목으로 나눈다.

② 기초공통과목시험은 내규 제4조1항에서 나열한 전공필수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미시경제학(미시경제학연구1 및 미시경제학연구2), 거시경제학(거시경제학연구1 및 거시경제학연구2), 계량경제학(경제통계학연구 및 계량경제학연구)의 3개 분야로 구성된다. 분야 별 출제와 채점은 시험실시 당해연도 과목 담당교수가 맡는다.

③ 기초공통과목의 분야 별 시험은 Part1(미시경제학연구1, 거시경제학연구1, 경제통계학연구)과 Part2(미시경제학연구2, 거시경제학연구2, 계량경제학연구)로 구성되며 석사과정은 Part1, 박사과정은 Part2, 석박통합과정은 Part1과 Part2를 응시한다.

④ 기초공통과목의 분야 별 시험은 매 학년도 12월과 익년도 2월에 실시한다.

⑤ 기초공통과목의 통과여부는 각 분야 별로 합산하여 결정하며, 통과기준은 100점 만점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석박통합과정과 박사과정은 70점 이상으로 한다.

⑥ 석박통합과정 학생은 2년 차의 12월까지 분야 별로 최대 총 3회에 한하여 기초공통과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입학 후 1년 이내에 3개 분야 중 2개 분야 이상을 통과하여야 하며, 2년 내에 3개 분야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석박통합과정 탈락자 규정에 따라 석사과정으로 전환된다. 단, 휴학 이후 복학한 경우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응시 횟수와 통과요건을 적용한다.

⑦ 전공선택과목시험은 매 학년도 3월과 9월에 실시하며 별표의 전공필드 중 하나의 필드를 선택하여 응시한다.

⑧ 전공선택과목시험의 통과기준은 100점 만점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석박통합과정과 박사과정은 70점 이상으로 한다. 단, 석사과정의 경우 해당 전공과목에 대한 성적이 B+ 이상인 경우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전공선택과목시험 응시원서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석박통합 중도포기와 탈락) ① 석박통합과정 입학 후 2학기부터 신청가능하며,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수업일수 1/2선까지 대학원위원회 위원장과 상담 후 서명을 받아 중도포기원(포털에서 신청 후 출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외적 상황이 인정될 경우 종강일 이내의 신청도 허용한다.

② 석박통합과정의 탈락사유(내규 제6조, 세칙 제4조6항)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학기에 학부 행정절차에 따라 탈락자로 전환한다.

③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자와 탈락자는 석사과정으로 전환되며 석사과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논문심사를 거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내규 제7조 관련))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업성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신입생 및 수료생은 수료직전 학기는 성적으로 대신한다.

1. 직전학기 평점평균 3.3이상
2. 직전학기 이수학점 9학점 이상
3. 단, 성적 및 이수학점이 미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유서를 첨부하여 추천 가능
4. BK21 장학금의 경우 BK21사업단의 별도 규정의 요건을 적용한다.

제7조(Proposal 요건(내규 제8조 관련)) ① Proposal 발표일 전에 교내 논문심사위원의 명단이 확정되어야 한다. 교내심사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비전임교원으로 하며, 논문지도교수는 교내 논문심사위원 2인 이상을 대학원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Proposal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박사과정 학생은 Proposal 발표 10일 전에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며, Proposal 발표용 논문 1부를 대학원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대학원위원회 위원장은 경제학부 전 교수와 대학원생을 Proposal에 초청하는 안내문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Proposal 직후 교내 논문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며, 논문 지도교수는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발표회의 형식은 공개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⑥ 박사학위 논문심사 신청일 전에 Proposal이 통과되어야 한다.

제8조(학술지 게재요건(내규 제9조 관련)) ①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박사학위논문 심사신청일 전에 아래의 기준에 따라 100점 이상을 획득하고 학술지 게재 결과물과 함께 대학원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 명의로 SSCI, SCI, SCI-E,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한 학술 논문에 한하여 학술지 게재요건을 인정한다.
- ③ 단독 논문의 경우에는 100점, 저자의 수가 2인인 경우에는 70점으로 인정하며, 3인 이상의 경우에는 50점으로 인정한다. 인정비율 계산에 있어서 서울대학교 교수는 공저자로 보지 않는다.
- ④ 학술지의 편집장으로부터 게재 예정증명서를 받은 경우도 학술지게재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논문심사(내규 제10조 관련)) ① 학위논문심사의 자세한 절차는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및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을 따른다.

② 심사부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로 정한다.

③ 박사학위 논문심사 신청 시 내규 제8조의 Proposal 요건, 제9조의 학술지게재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10조(퇴출(내규 제 11조 관련)) 석박통합과정과 박사과정 학생이 운영내규에 정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그 학생은 해당과정에서 퇴출되며, 대학원위원회는 그와 같은 사실을 사회과학대학장, 논문 지도교수, 그리고 논문심사위원 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지도교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그 학생의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세칙 제7, 8, 9조는 2023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 전공선택과목 논문제출시험 필드

거시경제학, 산업조직론, 공공경제학, 계량경제학, 국제무역론, 노동경제학, 기술 및 발전경제학, 금융경제학, 경제학설사, 기업조직 및 성장론, 서양경제사, 인구경제학, 이행기경제와 경제체제론, 응용미시경제학연구, 행동경제학, 실험경제학

(서식) 석박통합/박사과정 진행보고서

본 보고서는 직전년도 석박통합과정/박사과정 진행상황을 매년 **2월말에**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며,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합니다.

1.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지도교수		현재학기	
졸업예상연도		연락처	
입학과정	☐ 석박통합 ☐ 박사		

2. 수강내역

누적 전체 평점	/4.3			
누적 수강 학점수				
직전년도 수강과목 및 평점	20__년 1학기	평점()	20__년 2학기	평점()

3. 논문자격시험

- ☐ 기초공통 미시분야합격 ☐ 기초공통 거시분야합격 ☐ 기초공통 통계계량분야합격
☐ 전공선택 ()분야 합격
☐ 논문자격시험 합격일자: 년 월 일 (기초공통, 전공, 한국어(해당자) 모두 통과)
☐ 입학 후 3-4년 이내 통과 (박사과정 3년 이내, 석박통합 4년 이내)

4. 직전년도의 학업성취를 간략히 기술하세요.

5. 올해의 학업계획을 간략히 기술하세요.

6. Proposal 발표

제목			
발표일	년 월 일	통과여부	☐ 통과
교내심사위원			

7. 학술지게재 (게재 예정증명서를 받은 경우도 포함)

☐ 학술지 게재점수: 총 _____점 (100점 이상 여부)

공동저자		인정점수	
논문제목			
게재 학술지명		발표연월	
공동저자		인정점수	
논문제목			
게재 학술지명		발표연월	

8. 학위논문심사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박사학위논문심사신청이 가능합니다.

- ☐ 논자시 입학 후 3-4년 이내 통과 (박사과정 3년이내, 석박통합 4년이내)
- ☐ Proposal 통과
- ☐ 학술지 게재요건 충족

작 성 자: (인)
지 도 교 수: (인)

20 년 월 일